

수원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875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8757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20가단528970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

피고, 항소인 C

변론종결 2021. 7. 7.

판결선고 2021. 8. 18.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20가단52897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8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염기창, 판사 이지형, 판사 최호열